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단5175827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박진석, 허진

피고B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한경민

변론 종결2021. 1. 14.

판결 선고2021.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회계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5.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1)) 컨버전2)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관련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 재무자문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3계약'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1) 이 사건 1계약

제1조(목적)

1. 본 계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을 컨버전하는 갑에게 을이 제공하는 IFRS에 관한 자문용역에 대하여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IFRS 컨버전은 갑이 수행하는 것이며, 을은 갑의 IFRS 도입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2조(용역의 목적과 범위)

1. 본 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수행할 자문용역의 주요 범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① 회사의 현행 적용 기업회계기준과 IFRS와의 차이 분석에 대한 자문
- ② 주요항목별 상세영향분석에 대한 자문
- ③ 선택적 회계처리 영향 검토 및 회계정책 도출 자문
- ④ IFRS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시 참고할 회계처리 및 주석사례 제공

제6조(용역대가 및 지급)

1. 본 용역과 관련한 용역수수료는 일금 사천만원(₩40,000,000)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용역보수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의 용역보수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이 계약과 동시에 착수금(30%) 금

천이백만원(₩12,000,000)을 지급하고, 중도금(40%)으로 금 천육백만원(₩16,000,000)을 중간

보고시 지급하며, 잔금(30%)으로 금 천이백만원(₩12,000,000)은 용역종료일(산출물제시)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2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자문용역을 을이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각각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역의 목적과 범위)

을은 갑이 요청하는 용역을 제공하며, 상세한 을의 업무범위는 (별첨1)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관련 자문업무의 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을이 제공하는 용역은 갑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데 있다.

제6조(용역대가 및 지급)

1. 본 용역과 관련한 용역수수료는 일금 육천만원(₩60,000,000)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용역보수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의 용역보수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이 계약과 동시에 착수금(30%) 금 천팔백만원(₩18,000,000)을 지급하고, 중도금(40%)으로 금 이천사백만원(₩24,000,000)을 중간 보고서 지급하며, 잔금(30%)으로 금 천팔백만원(₩18,000,000)은 용역종료일(산출물제시)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3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기업공개(IPO)에 있어 이와 관련한 재무부고서 작성 및 재무자문용역을 을이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각각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역의 목적과 범위)

1. 본 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수행할 자문용역의 주요 범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① IFRS 1115호, 1116호, 1109호, 1023호 재무보고서

② IPO 재무관련 이슈사항 및 개선안 보고

③ 지정감사 재무자문

제6조(용역대가 및 지급)

1. 본 용역과 관련한 용역수수료는 일금 삼천만원(₩30,000,000)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용역보수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의 용역보수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이 계약과 동시에 착수금(30%) 금

구백만원(₩9,000,000)을 지급하고, 중도금(40%)으로 금 천이백만원(₩12,000,000)을 중간

보고시 지급하며, 잔금(30%)으로 금 구백만원(₩9,000,000)은 용역종료일(산출물제시)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각 계약의 공통조항

제3조(용역수행책임자 및 용역수행인력에 관한 사항)

1. 을의 본 용역에 대한 책임자는 C 공인회계사이다.

2. 을은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역수행인력을 선임함에 있어 갑의 요구에 맞는 지식, 자격 및 경험이 있는 자를 사전 선임한다.

제4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실제 용역 착수일(실제 용역수행인원의 투입일)로부터 최종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다만,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연장된 계약기간 및 추가용역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5조(용역의 수행)

1.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시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용역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공 등 업무협조)

1. 갑은 본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관련자료를 을에게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을에게 제공된 자료는 사실과 상이함이 없어야 한다.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의존할 것이며 갑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의무는 없다.

3. 갑은 용역을 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 을의 요청에 따라 을에게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의 해약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규정이나 본 계약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최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다.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금(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합계 4,2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7. 중간보고서를, 같은 해 6. 18. '수익인식 Check List'를 보냈다.

마. 원고가 2019. 6. 21. 피고의 책임자 C 공인회계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더 이상 업무를 내부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계약금 일부의 반환을 요청하자 C은 반환의사가 없고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답변한 후 업무수행을 중단하였다.

바. 원고는 2019. 6. 2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견적서에서 제안한 용역업무의 수행일정과 투입 인원 및 시간, 진행상황 보고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책임자 C이 일방적으로 용역수행을 중단하고 용역수행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제3조 2, 제5조 2, 견적서3) 5에 근거하여 ① 발신일 기준 현재까지의 용역수행인력 및 구체적 수행내역, 업무장소, 수행시간, ② 발신일 기준 현재까지의 피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용역수행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최종 업무수행 및 저장날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파일 포함), ③ 발신일 이전에 실제로 수행하여 저장된 업무수행자료(소프트카피)를 즉시 회신하여 주고,

또한 C과는 더 이상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용역수행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면서 위 최고서가 이 사건 각 계약 제13조 1. ②항의 '시정 최고'임을 분명히 하였고, 위 최고서는 같은 달 2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사. 위 최고서를 받은 피고는 2019. 7. 9. 원고에게 'C은 2019. 5. 15.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원고의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D 공인회계사는 96시간 동안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9.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6조 2.에서 정한 중간 보고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관하여 추가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달 18. 원고에게 '수익인식 Check List'를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E 이사는 C에게 업무의 주도권을 외부감사에게 맡기라고 하였으나 이는 공인회계사법 제22조가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C은 불법적인 요청을 거절한 것뿐이다. 그러자 E 이사는 C에게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 업무수행이 불가피하게 중단된 것이지 C이 일방적으로 용역수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용역수행책임자 교체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고가 중간 보고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중도금 5,7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아. 그러자 원고는 2019. 7. 12. '피고가 위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시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 제13조 및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여 같은 달 1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자.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 5. 3. 원고에게 별지 기재 서면(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을 송부한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견적서에는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수행 일정 중 국제회계기준(IFRS)은 2019년 7월 둘째 주까지, 내부회계관리구축은 2019년 7월말 이후, IPO 지정감사보고서는 2020년 3월 넷째 주까지로 되어 있고, 투입인원은 각 3명씩, 투입시간은 국제회계기준(IFRS) 2달, 내부회계관리구축 3달, IPO 지정감사보고서 10달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2호증,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견적서에서 제안한 용역업무의 수행일정이 지연되고, 투입 인원 및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진행상황 보고 등을 불성실하게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함과 동시에 용역수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이 사건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수령한 계약금 4,29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견적서에서 제안한 용역업무의 수행일정과 투입 인원 및 시간을 지키지 않았는지. 위 주장은 이 사건 견적서가 이 사건 계약내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계약조항에는 이 사건 견적서가 계약내용에 포함된다는 등의 어떠한 문구도 들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견적서가 계약문서의 일부로 첨부되지도 아니한 점(반면에 아래에서 보는 원고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ERP 구축계약서에는 '견적서가 계약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제2조 1.), ② 용역기간(용역수행일정)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는 '계약 체결일 이후 실제 용역 착수일(실제 용역수행인원의 투입일)로부터 최종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다만,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4조).'고 되어 있어 용역수행의 착수일과 종료일을 불확정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중 국제회계기준 전환 자문과 관련해서는 과거 재무제표 및 명세서의 계정별 원장, 종속회사 재무제표 및 명세서와 주요 매출계약서 등의 각종계약서, 유, 무형자산 상각대장, 리스(금융, 운용) 사용내역 등 각종 전산파일, 과거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과 관련해서는 조직도, 업무분장, 인원현황, 각 조직별 업무기술서 등을 원고에게 적시에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계약 제8조 1.)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한도 불확정적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용역수행의 착수일과 종료일을 특정해놓는 것보다는 불확정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9년 6월까지의 실적이 집계된 반기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2019. 8. 중순경 마쳐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된 피고의 용역업무는 그 이후에나 완료할 수 있는 것이어서 2019년 7월 둘째 주까지

국제회계기준(IFRS) 컨버전 용역을 완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견적서의 업무수행일정과는 맞지 않는 점, ④ 투입인원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는 '피고의 용역책임자를 C으로 정하고, 피고가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역수행인력을 선임함에 있어 원고의 요구에 맞는 지식, 자격 및 경험이 있는 자를 사전 선임한다.'고 되어 있을 뿐 투입인원수와 투입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각 계약은 성질상 위임계약으로서 용역책임자를 C으로 정한 것 이외에 얼마의 인원을 투입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지는 수임인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 점, ⑥ 이 사건 각 계약체결 후 자료수집 및 상시업무는 C이 주로 처리하고, D 공인회계사가 이를 보조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최고서를 보낼 때까지 상시 3인이 원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의 제기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견적서의 용역수행일정과 투입인원, 시간 부분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참고할 사항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계약내용의 일부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견적서가 이 사건 각 계약내용의 일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불성실한 중간 보고를 하였는지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13, 14,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 전인 2018. 11. 2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이 2019. 6. 14.까지 ERP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로 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 2019. 6. 5. 납기를 2019. 7. 4.로, 2019. 7. 12. 납기를 2019. 9. 14.까지로 각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ERP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기준서 1115호 수익인식기준을 진행율을 기준으로 할지 또는 인도 기준으로 할지 먼저 결정하여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원고는 F이 ERP 구축 용역을 위 계약기간(2019. 6. 14.)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계약 전 협의단계부터 C에게 '기준서 1115호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전환효과 검토'를 최우선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계약체결 조건이라고 전달하여 피고도 승낙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용역개시일인 2019. 5. 15.부터 수차례 C에게 위 전환효과 검토를 2019. 6. 초까지 우선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6. 17. 중간보고에서도 이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의 ERP 구축에 심각한 지장과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15호증의 1의 기재는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의 의견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에는 ERP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익인식기준을 확정해주는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의 ERP 시스템 구축 시 검수 이전에 필수적으로 수익인식기준(진행기준 VS 완성기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점, 그런데 원고와 F 간의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F은 ERP 구축의 계약 만료일(2019. 6. 14.) 4주 전(2019. 5. 14.경)에 원고에게 검수확인을 요청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계약은 의사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수 예정일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의 ERP 시스템 구축일정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는 2019. 6. 17. 논의된 바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전환과 관련하여 KIFRS 1115호 수익인식에 대한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수익인식 Check List를 송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중간 보고를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조항에서 정한 용역수행일정을 지연하고, 부족한 인원을 투입하였다거나 중간 보고를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제통고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수

별지

1)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약자, 2001년 설립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는 회계기준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금융기업 일부, 일부 공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2) 종전 회계기준(이 사건에서는 국내 회계기준)을 다른 회계기준(이 사건에서는 IFRS)으로 변환하여 합치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3) 아래 자.항에서 보는 이 사건 견적서이다.